

정주형 교 수

형사소송법 GS-3순환

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한 출제예상문제 엄선 및 답안작성의 실전적 완성

- 강의일정 2017년 3/24(금) ~ 4/3(월), 오전, 월~토 강의, 총 9 회
 〈강평있는 날〉 08:00~09:00 (1시간 시험)
 09:20~11:00 (100분 강평)
 〈강평없는 날〉 08:00~10:00 (2시간 시험)

- 교 재 모의고사 문제 · 해설(제공)
 + 최신판례자료 · 기출자료(제공)
 + 각자 기본서(참조교재)

- 강의개요
1. 가장 출제유력한 최신판례와 최신논점들을 집중적으로 출제합니다.
 기출논점과 최신학계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여, 최근 이어온 불의타가 절대 불의타가 아
 니라는 점을 증명해 드립니다. 문제는 가장 출제가 유력한 2013~2017년도의 최신판례를
 위주로 구성할 것입니다. 2순환에 본 문제라도 중요논점의 경우 의도적으로 제하지는 않겠
 습니다. 가급적 회피하겠지만, 중요한 논점은 여러 가지 변형형태로 출제되도록 하여, 문
 제가 너무 지엽적이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.
 2. 강평시간에는 사례해결방법론과 최신판례, 2017변호사시험, 법조문의 체계(핵심절차) 등을
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최신판례는 가급적 모두 강평하도록 함으로써, 최신판례
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■■ 강의목표 3순환의 구체적 목표

3순환 강의는 합격을 위한 최종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수험생분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. 매 시험마다 자신의 답안작성시간을 답안지 뒤에 표시하신 후 스스로 시간을 줄여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

강사는 가장 출제 유력한 문제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서 **최신판례는 최대한 사례문 제화**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학계의 흐름과 변호사시험(선택형/사례형)을 분석하여 가장 시의적절한 논점으로 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. 2순환에 출제된 논점이라도 이를 배제하지 않고 적절히 섞어서 출제를 할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최신판례와 불의타성 문제, 제도개괄형 문제 등을 포함하여, 가장 실전적인 문제로 구성할 것입니다.

무엇보다도, 최근에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간의 교류가 활발합니다. 이에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적극적으로 출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■■ 예상논점등 첫날은 최신판례 위주로 강평을 진행할 것입니다. 또한 진도범위에서 **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도와 무관하게 출제될 것입니다.**

강좌별 시험범위(진도표)

| 횟수 | 날짜 | 강평 | 주요테마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■■ 제 1 회 | 3/24 (금) | 1h 시험 <u>〈강평1〉</u> |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, 진술거부권, 내사와 수사, 검사와 사경과의 관계, 수사구조론과 영장의 법적성질, 수사조건론, 합정수사, 불심검문, 고소, 최신판례와 최신중요논점 개관 |
| ■■ 제 2 회 | 3/25 (토) | 2h시험 |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, 신종수사기법, 피의자신문, 임의동행, 체포제도, 구속의 요건과 영장의 집행, 구속된 피의자·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제도, |
| ■■ 제 3 회 | 3/27 (월) | 1h 시험 <u>〈강평2〉</u> | 구속기간, 이중구속과 별건구속, 압수·수색·검증의 절차와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, 감정유치와 감정처분, 대물적 강제처분의 영장주의 예외,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|
| ■■ 제 4 회 | 3/28 (화) | 2h시험 | 재정신청, 공소제기, 공소권남용론, 공소제기의 방식, 공소장일본주의, 소송계속, 공소제기 후 수사의 제한, 법원의 심판범위, 일죄일부의 공소제기, 공소시효, |
| ■■ 제 5 회 | 3/29 (수) | 1h 시험 <u>〈강평3〉</u> 대표 첨삭 | 공소장변경제도, 포괄일죄와 이중기소, 공판절차의 기본원칙, 증거개시제도, 공판준비절차, 소송지휘권, 직권증거조사의무, 법원의 증거결정 |
| ■■ 제 6 회 | 3/30 (목) | 2h시험 |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, 이의신청, 증인신문, 피고인신문, 공판절차의 정지와 개신, 변론의 분리·병합·재개, 증거조사, 증거재판주의, 거증책임, 자백배제법칙, 진술의 임의성법칙, 제310조의2 제311조, 제312조①②③④, 공범의 소송관계 |
| ■■ 제 7 회 | 3/31 (금) | 1h 시험 <u>〈강평4〉</u> | 제312⑤⑥, 제313조①②, 제314조, 제315조, 제316조①②, 재전문증거, 증거동의, 탄핵증거 |
| ■■ 제 8 회 | 4/1 (토) | 2h 시험 |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, 자유심증주의, 제56조, 자백의 보강법칙, 기관력, 이심의 시기, 상소의 이익, 일부상소,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, 항소심구조론, 상소절차의 흐름, 항고와 준항고 |
| ■■ 제 9 회 | 4/3 (월) | <u>〈강평5〉</u> | 재심제도, 비상상고, 국민참여재판, 형사소송법의 법원, 지도이념, 기본구조, 당사자능력, 법원의 구성, 전심판여와 제척, 기피, 관할, 검사, 피고인의 특정, 진술거부권, 접견교통권, 국선변호인, 소송행위 |

* 3순환의 특성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항상 출제될 수 있고, 가급적 진도범위 내에서 출제할 것이나 중요관련 논점이 있을 경우 불가피하게 진도범위 외에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.